

충청북도의회에출석·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7
----------	----

제안년월일 : 2007년 3월 19일
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

1. 제안이유

-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라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 중 일부 조 명칭을 관계법령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 제명 띄어쓰기

- “충청북도의회에출석·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”를 “충청북도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”로 정정

나.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 중 관계 법률 조 변경

- 제2조제5호 중 “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6조”를 “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34조”로 한다.(안 제2조제5호)
- 제2조제6호 중 “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4조”를 “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32조”로 한다.(안 제2조제6호)

3. 개정조례안 : 별첨

4.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5. 관계법령발취 : 별첨

- 가.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32조, 제34조

충청북도의회에출석·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의회에출석·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충청북도의회에출석·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”를 “충청북도 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2조제5호 중 “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6조”를 “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34조”로 한다.

제2조제6호 중 “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4조”를 “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32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<u>충청북도의회에출석·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</u></p> <p>제2조(범위) (생략)</p> <p>1.~4. (생략)</p> <p>5. <u>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6조의</u> 규정에 의한 하급교육 행정기관의 장(교육장)</p> <p>6. <u>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4조의</u>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장</p> <p>7. (생략)</p>	<p><u>충청북도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</u></p> <p>제2조(범위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~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「<u>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</u>」 제34조의 …… ……………</p> <p>6. 「<u>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</u>」 제22조의 …… ……………</p> <p>7. (현행과 같음)</p>

관계법령발췌

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

제32조(교육기관의 설치) 교육감은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.

제34조(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) ①시·도의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·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(이하 "지역교육청"이라 한다)을 둔다.

②지역교육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지역교육청에 교육장을 두되 장학관으로 보하고, 그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④지역교육청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